의안번호	2211039
의 뢰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8.14.
추계번호	25D338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	의무규정
2	안 제4조제2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	의무규정
3	안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	의무규정
4	안 부칙 제3조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	의무규정
5	안 부칙 제3조제2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제2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	안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4	안 부칙 제3조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5	안 부칙 제3조제2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2. 상세 사유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안 제4조,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제정안에 따라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국가배상사건 중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정안에 따라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금,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금(이하 “패소 부담금”이라 함)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제기되지 못한 국가배상청구 건수, 승소 및 패소 가능성, 법원 판결금, 배상심의회 결정금 및 패소 부담금 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2020~2024년 국가배상금(법원 판결금 및 배상심의회 결정금), 패소 부담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아래와 같음

[표 1] 국가배상금 등 지급 현황: 2020~2024년

(단위: 건, 백만원)

	법원 판결금		배상심의회 결정금		소송비용확정액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258	62,530	94	210	411	10,041	763	72,781
2021	275	215,908	60	83	430	7,751	765	223,742
2022	293	140,810	57	87	532	7,471	882	148,368
2023	316	93,217	75	170	376	6,011	767	99,398
2024	444	96,285	81	246	754	10,169	1,279	106,700

자료: 2025 법무연감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